

연세대 법학연구원 법사회사센터

제1회 법과 역사 포럼

18-19세기 서울 사람의 일상 속 분쟁과 사법

○일시 : 4월 14일(금)-21일(금) 15:00 ~ 18:00

○장소 : 연세대 광복관 107호(사암홀)

연세대 법학연구원 법사회사센터 제1회 법과 역사 포럼

주제 : 18~19세기 서울 사람의 일상 속 분쟁과 사법

▶ 제1강좌 4월 14일(금) 오후 3시~5시 포도청 활동과 서울 사람과의 갈등

차인배(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제2강좌 4월 21일(금) 오후 3시~5시 한성부 주택 소유 형태와 분쟁

유승희(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일시 : 4월 14일(금), 4월 21일(금) 오후 3~5시
- 장소 : 연세대 광복관 107호(사암홀)
- 주최 : 연세대 법학연구원 법사회사센터
- 수강 대상 : 연세대 학부생 ·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생 · 교직원 · 일반인
- 수강 인원 : 50명 내외
- 수강 접수 : 이메일 및 QR코드 신청



* 성명,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와 수강의사 전달

chahis@yonsei.ac.k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 자료집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36)

포도청 운영과

서울 사람과의 갈등



조선초 순군만호부 → 의금부

- 조선 초 사법 및 치안 기구는 삼법사(형조, 한성부, 사헌부), 순청, 이문, 경수소, 방백, 수령, 순군만호부 등
- 순군만호부 : 포도(捕盜)·순작(巡綽)·금란(禁亂) 업무 담당
- 의금부 창설 : 순군만호부 → 순위부 → 의용순금부 → 의금부(義禁府)(태종14, 1414)
- 의금부가 강상범죄, 왕옥사건 등 금란 역할로 전환
- 포도·순작 활동에 관한 일시적으로 공백 발생

포도장제의 시행

- 문종대 ‘도적을 잡아들이는 관리(捕盜官)’ 설치에 관한 논의 시작
- 그러나 포도(捕盜)라고 관직을 이름 지어서 후세에 전할 수는 없다(以捕盜名官, 不可垂之後世)’는 의견에 따라 실현되지 못함
- 예종~성종 초 무안지역에 떼도적 장영기(약100여명 규모)가 출몰을 계기로 포도사 목 마련, 토포관인 주장 및 부장 파견하여 진압
- 성종대에 양주지역 떼도적을 단속하기 위해 ‘포도장(捕盜將)’이라는 명칭의 경장(京將) 파견
- 포조장 파견에 따른 폐단으로 치폐를 거듭

포도사목(捕盜事目)

1. 좌변(左邊)·우변(右邊)으로 나누어, 서울의 동부·남부·중부와 경기좌도(京畿左道)는 좌변이 맡고, 서울의 서부·북부와 경기우도는 우변이 맡아, 각각 그 변안에서 사나운 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여염의 걱정거리가 되는 짓을 하는 줄 못사람이 다 알되, 힘이 모자라서 잡지 못하는 자들을 아뢰고 잡으라.

1. 포도장(捕盜將)의 졸오(卒伍)는, 겸사복(兼司僕)·장용대(壯勇隊) 같은 무리와 같이 떠날 때에 임하여 적당히 붙여 주라.

1. 다섯 달 안에 강도 한둘이나 절도 네 다섯을 잡으면 넉넉히 상을 주되, 비록 정한 달 안에 기한을 맞추어 잡지 못하더라도 한두 달 안에 정한 수대로 잡으면 또한 상을 주라.

1. 좌변의 지경에 사는 도둑이 우변에서 잡히더라도 우변에 상을 주고, 좌변도 그와 같이 하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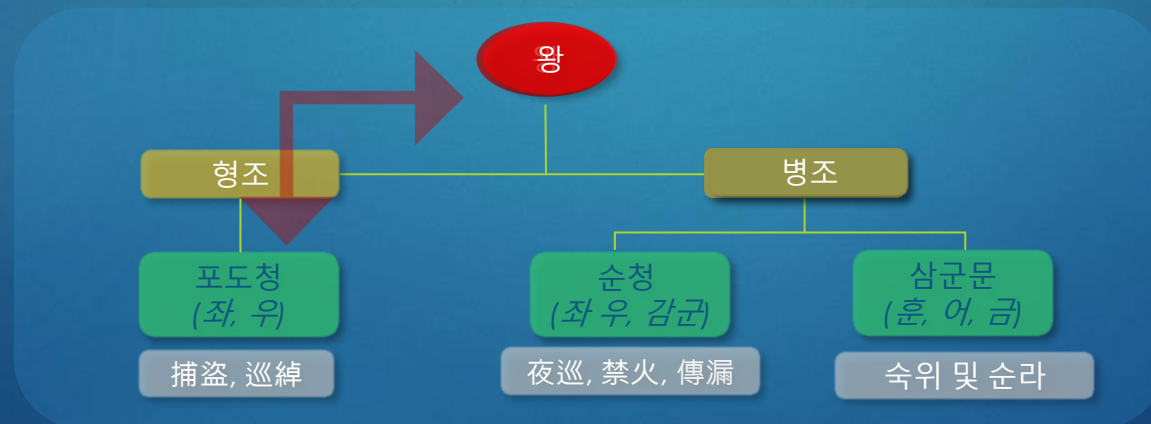
<<성종실록>> 12년 3월 24일(무술)

포도청 창설과 포도

- 성종대에 비해 중종대 포도장파견 사례가 현저히 줄어 듦
- 중종대 들어 지방보다는 도성의 치안제도로 전환 됨
- 포도장에서 포도대장으로 지위가 격상됨. 대장의 인사권은 병조가 의망 국왕이 선출
- 종사관, 부장, 군관 등에 대한 천거는 포도대장이 올리지만 병조가 낙점
- 조직 규모(포도군관 10명, 포도부장 3명, 군사 50여 명)의 안정화 및 확충
- 포도청 창설로 포도·순작 업무 재개 및 안착
- 일반범죄(삼금: 酒禁, 牛禁, 松禁)및 야금,풍속 교정 등 그 역할이 확대
- 선비(유생)로 이름하는 자는 포도청에 보내지 말게 함(以儒爲名者之勿送捕廳也)<<수교집록>>

조선 후기 직수아문(直囚衙門)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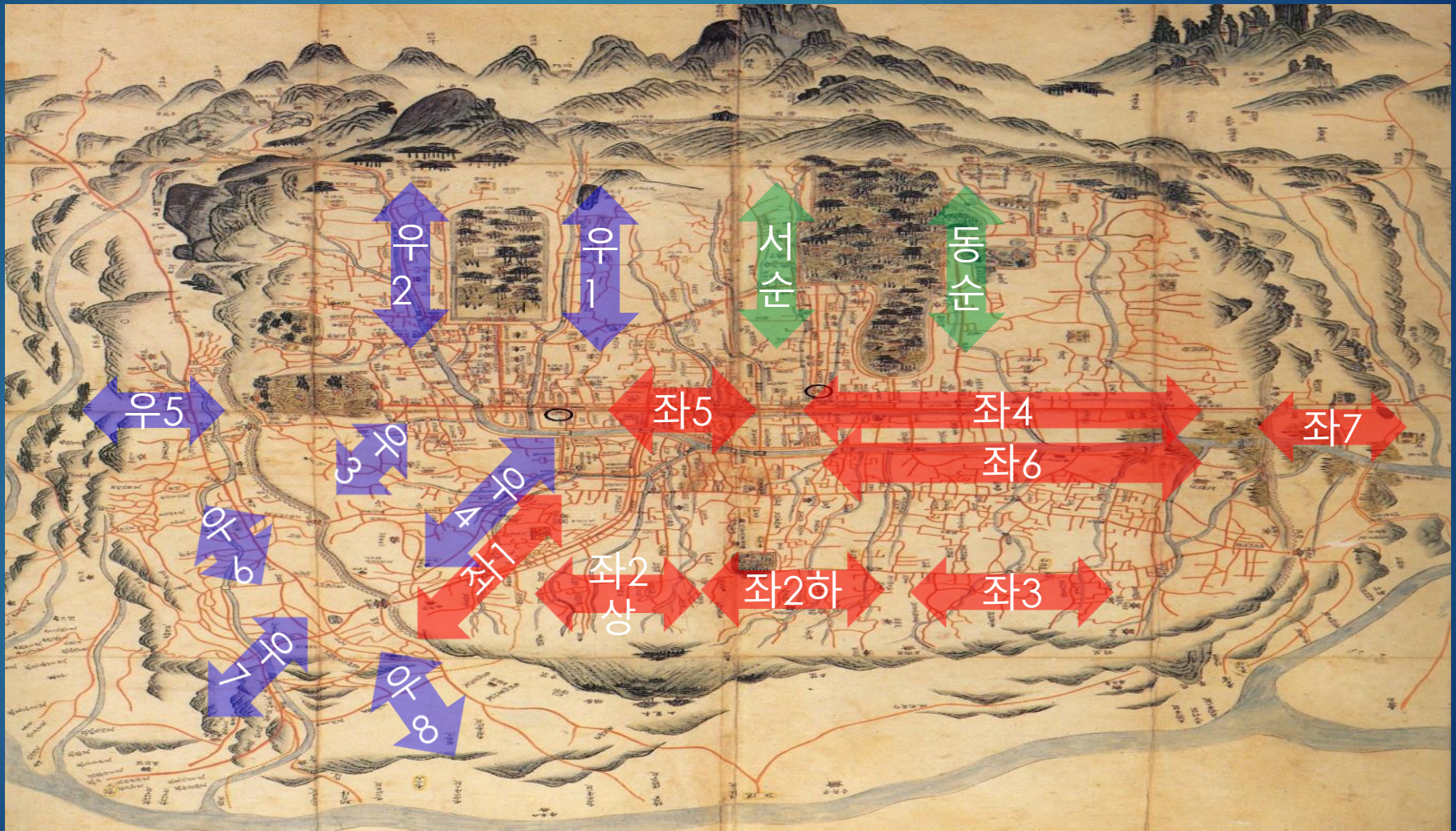
- 직수아문은 죄인을 직접 구송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형조·병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례원(掌隸院)·종부시(宗簿寺) 및 관찰사, 수령 등
- 1686년(숙종12) 포도청이 비변사와 함께 공식적으로 직수아문에 편제
- 포도청이 공식적으로 죄수에 관한 수사·체포 및 수금권 등이 부여됨
- 포도대장이 태 50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직단권(自斷權) 가짐
- 임시기구에서 공식적인 사법기구로 인정됨
- 특히 포도청의 관직체계가 『속대전』 병전에 등재되면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됨



포도청 금조(포도화도)
금조

시기	금조 내용	건수
『六典條例』 1865년(고종2)	御寶僞造, 印信僞造, 僞科, 僞札, 防納, 穀物和沙和水, 私屠疊屠, 私鑄錢, 巫女雜技, 西北人人物招引, 邪學, 酗酒, 都賈物貨操縱, 彼人交易唐物, 誨淫·和奸, 騙取人財, 坊民非法	17건
『左捕廳臚錄』 1866년(고종3)	戢盜, 逆獄, 邪學, 御寶及印信僞造, 潛造紅蔘, 公穀防納, 僞科, 穀物和沙和水, 潛釀三玄酒, 私鑄錢, 潛疊屠, 西北人招引人物, 都賈物件操縱, 彼人犯越交易, 巫女, 酗酒, 雜技, 刼奸女人	18건

포도청 순라(순작화동)



포도청 조직 과 인원

문헌	대장	종사 관	부장 및 군관(포교)	서원	사령	군사	기 타
중종실록 『中宗實錄』 중종 36년 11월 11일	1	-	부장 3명, 군관 10명	-	-	50명	63
대전통편 『大典會通』(정조)	1	3	부장 42명	-	-	-	
포도청등록 『捕盜廳謄錄』 순조(1808) 윤5월 12일	1	3	군관 74명	4명	3명	64명	149
만기요람 『萬機要覽』 순조9년(1809)	1	3	군관 71명	4명	3명	64명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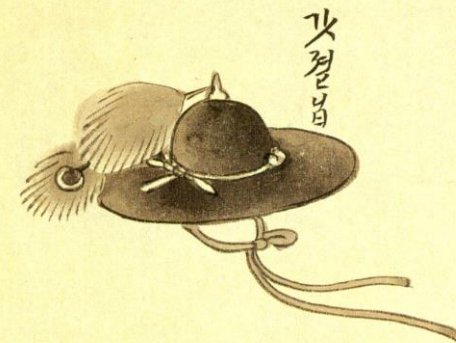
서원

포도대장

포교(군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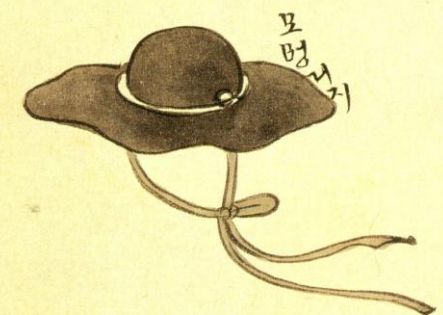
포졸

회자수(망나니)



가철은님

포교 전립



모명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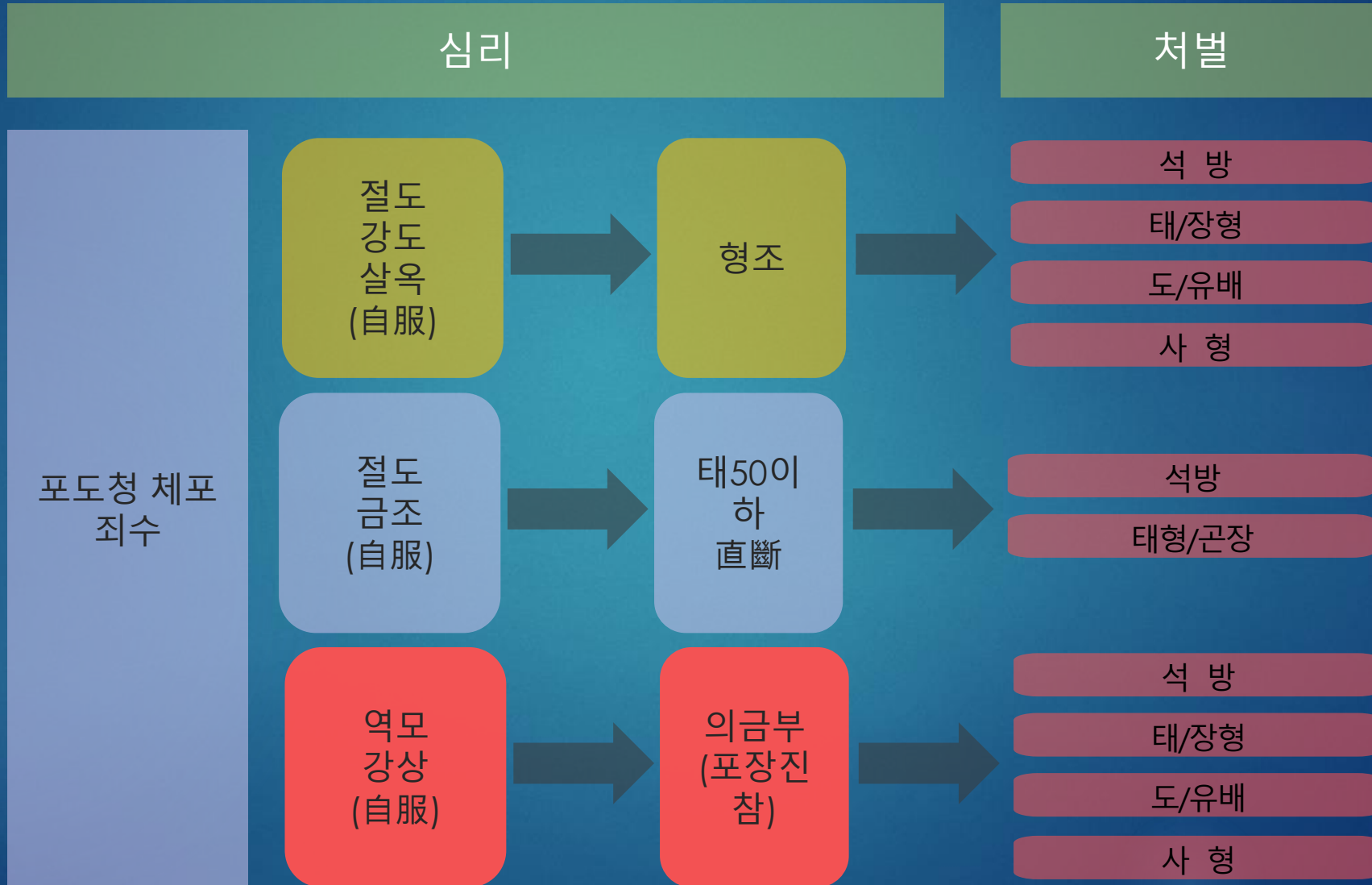
포졸 병거지

신원복, 월야밀회(月夜密會)



철편 (영근박물관도록, 16쪽, 2002)

형사사건 심리절차



연대	범인	1차		2차		3차		처단/결안	비고			
		포청	형조	포청	형조	포청	형조					
1681년 (숙종7)	明火殺人	1차 승복 처단						行刑				
		推治	이승									
		承服	結案									
1693년 (숙종19)	賊人	2차 승복 처단						行刑				
		推覈	이승	이승	이승							
		承服	不服 (有贓物, 獄情無疑者)	承服	結案							
				不服	묘당논의			疏釋				
1694년 (숙종20)	贓盜賊人	3차 승복 처단						行刑	甲戌定式			
		推覈	이승	이승	이승	大將按問	入啓이승					
		承服	不服	再覆	不服	三覆	結案					
1704년 (숙종30)	賊人	2차 승복 처단						行刑	甲申定式			
		추핵	이승	이승	이승							
		承服	變辭 (형추3차)	再覆	結案 (未受刑)							
1728년 (영조4)	殺越人命之類	2차 승복 처단						行刑	甲申定式	병행		
		추핵	이승	이승	이승							
		承服	不服	再覆	結案							
	不殺人不得財者	3차 승복 처단							甲戌定式			
		추핵	이승	이승	이승						이승	이승
		承服	不服	再覆	不服						三覆	結案
1738년 (영조14)	賊人	1차 승복 처단						行刑	속대전			
		추핵	이승								형신	
		承服	變辭 (형추3차)								取服 結案	

* 전거 1)신보수교집록 2)續大典 3)조선왕조실록 4)대승정원일기 5)비변사등록 등 참고.

포도청의 죄수 취복 과정의 형문(刑問) 형태

- 자복(自服) - 죄인 처벌의 가장 중요한 요건, 결안(판결문) 작성시 자복이 포함되어야 함
- 형문(刑問) 허용 신장 (訊杖) 으로 죄인의 정강이(脛)를 때림
- 1차에 30회 넘을 수 없고, 3일이 지난 후 추가 형문 가능
- 형문 과정에 맞은 신장은 이후 확정형에서 감면해 줌

예) 1차 취복 과정 형문 20대

판결에서 태 50대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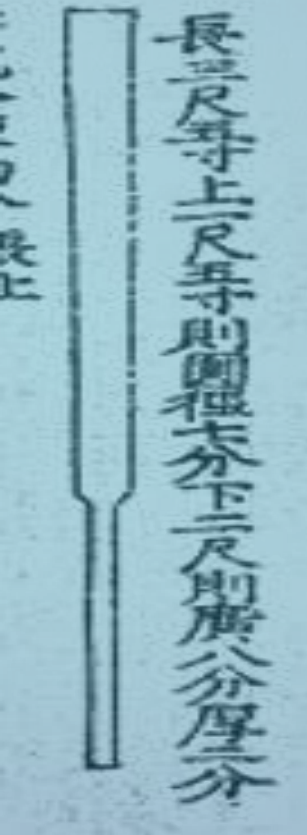
최종 행형 $50 - 20 = 30$ 대

- 포도청은 다양한 고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함 압슬, 낙형, 전도주뢰, 주뢰, 난장 등을 사용했지만 영조때 대부분 폐지



打刑文(打經)

訊杖



좌, 김윤보, 打刑問
우, 김준근, 형추하고



고려취형

압슬형은이뒤날인소



압슬형 폐지(영조 1년, 1725)

압슬형은 율문(律文)에 없다고 한다. 비록 율문에 실려 있다 하더라도 심한 것은 제거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율문에 없는 것이겠는가? 형문(刑問)하는 법 역시 옛날 오형(五刑)에 속한 것이 아니나, 이것은 『대명률(大明律)』에 실려 있지만, 압슬하는 법은 끝내 임금이 형을 삼가는 뜻이 아니다. 이천해가 흉악하고 사나워서 비록 능히 견뎠지만, 다른 사람이야 어찌 이를 견디겠으며, 보기에다 참혹했다. 이후에는 태배법(笞背法)을 없앤 예에 의해 영원히 압슬하는 법을 없애야 옳다. 『영조실록』 영조 3년 1월 18일.

별형은 늦불 씨시락 수발



낙형 폐지(영조 9년, 1733)

임금이 뜰을 뜬 것이 비로소 백 주(炷)를 채웠는데, 멈추라고 명하며 말하기를,

“뜸 뜬 종기가 점차 건디기 어려움을 깨닫고, 이어 무신년 국문할 때의 죄수의 일을 생각하면 나도 몰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난다.”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옛날부터 형(刑)을 제정한 것에는 모두 그 법이 있었다. 만약 법을 벗어나 아무리 통쾌하게 승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끝내 흘형(恤刑)에는 흠이 된다. (중략) 이 뒤로는 낙형을 압슬의예에 의하여 영구히 제거하도록 하라.” 『영조실록』 영조 9년 8월 22일

가새주리(剪刀周牢) 틀기

고을이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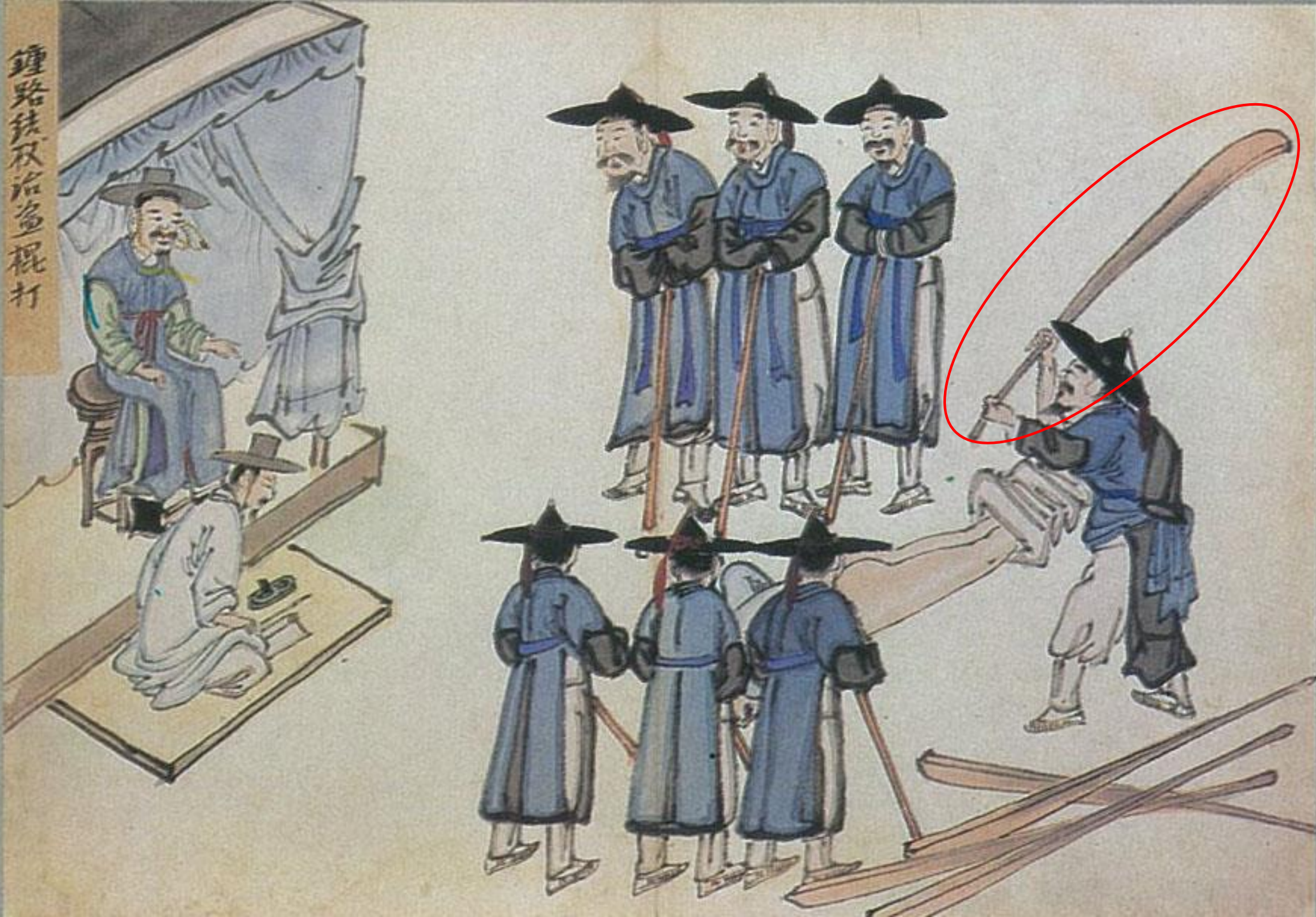
김준근, 줄이틀고



주리트는 모습
(mbc 드라마 야경꾼일지 화면 캡처)



김윤보, 줄주리



鍾路決杖治盜棍打

치도곤(治盜棍)

김윤보, 종로결장
치도곤타(鍾路決
杖治盜棍打)

도적 제조술, 난장

- 우리나라 관형에는 경한 자는 종아리(脛稍)를, 중한 자는 볼기(臀脛)를 때리는데, 종아리는 세워놓고, 볼기는 엮어 놓고 때린다. 또 중한 자는 전면으로부터 정강이뼈[脛骨]를 때리고 廷鞠에 이르러서는 벌령 뉘인 다음 다리를 오그리게 해놓고 위로부터 정강이뼈를 때리는데 이는 역신 金自點이 시작했다는 것으로 고금에 듣지 못한 것이다. 도적을 다스리는 데 이르러서는 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엄지발가락을 묶은 다음 나무를 두 정강이 사이에 세워 발을 위로 매달아 놓고 발 끝을 때리는데 열 발가락이 다 빠지기도 한다. 또 주뢰[周紐]·압슬·火烙이란 것이 있는데 刑典에는 실리지도 않은 것으로, 마치 猪怒突吼한 격이며, 大辟에 이르러서는 먼저 사지부터 자른다.

이익, 『성호사설』 제13권, 人事門, 刑

치도_刑 = 난장(拷_拷장)

- 조선전기부터 난장은 주로 도적을 다스리기 위한 치도형(治盜刑)으로 사용됨
- 조선후기 포도청이 직수아문으로 편입되면서 명실상부한 치도기구로 정착되자 포도청에서 난장을 주로 사용 함
- 난장은 반드시 도적에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난장은 자복을 받아내기 위한 손쉬운 형벌(快字之弊), 심지어 포졸과 포교의 사적 감정을 해소하는 곳에도 난장이 사용됨(김성팔 사건)
- 특히 영조대 무신난과 을해옥사에서 포도청이 동원되었고 이때 역모에 연루된 자들도 난장으로 다스리기도 했음

난장 폐지(영조 46년, 1770)

- 을해옥사 이후 영조를 비롯한 노론은 정치적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형정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 함
- 국청에서 주문한 자는 포도청에 회부하지 않도록 영원히 정제할 것을 규정함
- 동시에 영조는 난장이 **신체를 훼손해 효사상의 도리를 해치고**, 중국에도 없는 형벌이라는 점, 그리고 난장 대신 주죄가 치도형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난장을 제거 함
- 영조가 포도청에 명하여 난장을 시행하는 기구를 소각하도록 명한 후, “**오늘 백성이 능히 발가락을 보전하여 돌아가겠구나**” 라며 난장 폐지에 대한 소회를 밝힘

포도종사와 김성팔 난장 사건(사례 1)

포도대장
조빈



서원: 최수기



유직:사금, 세봉



종사관
김성팔



발괄(白活)

1차 난장 28대

2차 난장 사망 ?

양인
이지영



지영의 처
권조이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주요쟁점	증인 및 증거	주요 진술내용	형조 판단
김성팔의 순검여부	(증인1-1) 순라군	김성팔 부자 용모 확인	김성이 순검중이 아니라고 판단
	(증인1-2) 酒家主人	김성팔부자의 용모와 주막 출입 진술 확보, 시비 배경 파악	
이지영의 투절 여부	(증거자료2-1) 捕廳文案	추전(抽錢)과 작희(作戲)범으로 이지영을 체포, 체포 과정에 욕설, 난장을 때림	절도가 아니라고 판단
재수감 후 난장 시행 여부	(증거자료3-2) 屍親招	시친 처음 석방 때 발을 부었지만 발가락 온전, 사망 후 발가락 탈락, 김성팔 소행이라 주장	* 서원과 유직의 진술이 다름 * 김성팔이 입직 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고 판단
	(증인3-2) 捕廳 書員	처음 난장에는 발가락이 온전했음, 재수감되어 치폐된 후 발가락 떨어져 나감. 이유는 알 수 없음	
	(증거자료3-3) 屍帳	시친이 발가락 찾도록 부탁했지만, 찾지 못함	
	(증인 3-4) 留直二人	난장 서원의 처음 발가락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떨어졌다고 조작함, 아울러 떨어진 발가락이 2개였다고 진술, 2차 수감 때 난장은 김성팔의 지휘로 때림	
	(증거자료3-5) 入直公座簿	포청 종사관 입직공좌부에 성팔이 11~13일 입직 확인	

* 출처 : 『승정원일기』 영조 9년 3월 19일.

의금부 나졸 김흥도 사례(역오사건) (사례 2)

- 을해옥사 기간에 의금부 나졸 김흥도 윤상백 독살 혐의
- 포도청에 8일 동안 10차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난장 100여대를 때림
- 1차에 30회 넘을 수 없다는 원칙은 지켰지만, 3일이 지난 후 추가 형문한다는 규정에는 어긋남
- 납염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독설은 자백하지 않음
- 최종 결안에 독살한 것으로 기록 됨, 결국 사형에 처함

죄수명	일일	차수	고신	자복여부
김흥도	3월 18일	1차	平問	결백 주장
		2차	亂杖(10도)	納鹽 遲晚
	3월 20일	3차	先施威, 周牢	〃
		4차	周牢	〃
	3월 21일	5차	周牢(2차), 亂杖(15도)	〃
	3월 23일	6차	更推	
	3월 24일	7차	更推	妻子를 고문하겠다고 위협
		8차	亂杖(15도)	납염 지만
	3월 25일	9차	亂杖(30도)	〃
	3월 26일	10차	亂杖(30도)	〃
신상윤	3월 24일	1차	平問(推問)	〃
		2차	亂杖(15도)	〃
		3차	亂杖(15도)	〃
	3월 25일	4차	亂杖(30도)	〃
	3월 26일	5차	亂杖(30도)	〃

연호궁 수직군 신인득 사건(사례 3)

- 1823년(순조 23) 포도청은 연호궁 정당에서 주보와 향로 등의 의물을 훔친 수직군사 신인득을 체포
- 5월 20일 신인득은 좌우포도청 합동 조사에서 3차에 걸쳐 심문을 받았는데, 절도 사실을 순순히 자백
- 또한 매장범 김흥손 역시 신인득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했음을 시인
- 포도대장은 추가로 의심할 단서가 없으니 추가로 죄수를 형조로 이송할 것을 순조에게 보고
- 5월 22일 고종은 포도청의 판부를 읽어본 순조는 형조로 이송된 사건을 재차 포도청으로 되돌려 보내 재차 엄핵할 것을 구전으로 하교
- 재수사를 지시 받은 포도청은 신인득에게 추가로 3차례, 김흥손에게 2차례의 심문을 시행했지만, 추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형조로 이관

신인득 사건의 심리 과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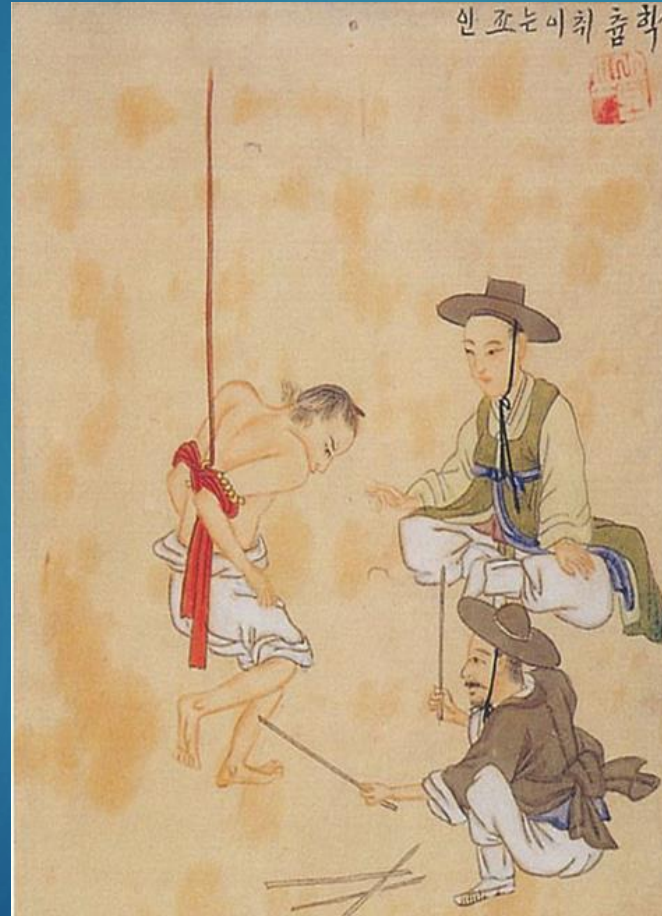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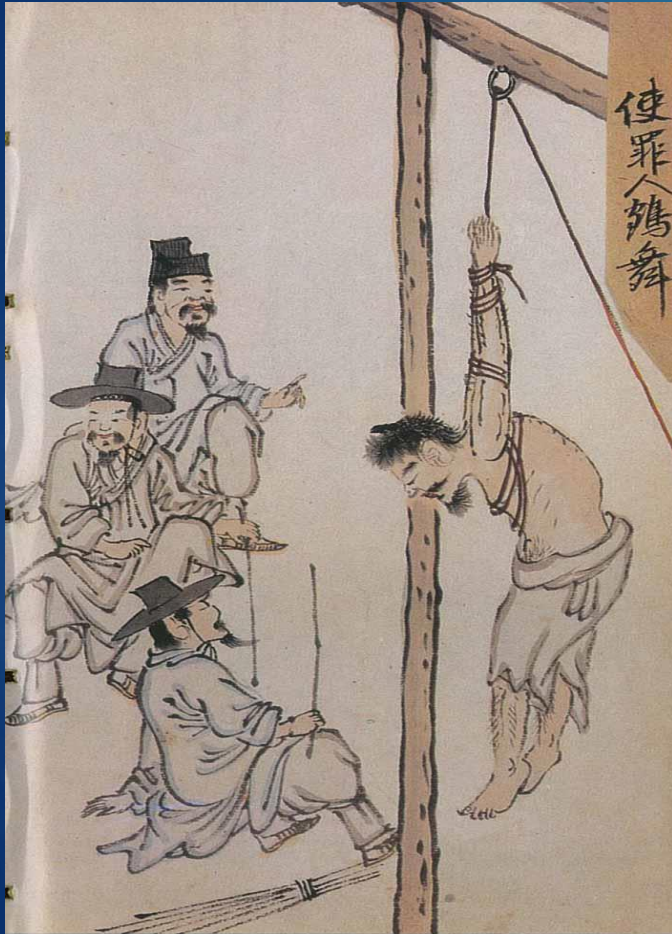
조사기관	일자	심문 절차	승관여부
좌우포도청	5월 20일	절도범 신인득 1~2차 심문	승관
		買藏범 김흥손 1~2차 심문	
		포도청 계목 및 형조 이송 내용 진달	
	5월 21(?)일	순조, 재조사 지시	
	5월 22일	절도범 신인득 3~5차 심문 : 승관	승관
		매장범 김흥손 3~4차 심문	
		포도청 계목 형조 이송 보고	
형조	5월 25일	절도범 신인득 1~2차 심문	무복 주장
		매장범 김흥손 1~2차 심문	
		형조 계목(무복내용) 진달	

신인득 사건의 심리 과정 2

순조		순조 포도대장 처벌과 포교에 대해 조사 지시	조작에 대한 조사 지시
좌우포도청	5월 26일	좌포군관 조덕행(趙德行, 60), 우포군관 홍무량(洪舜良, 50) : 1차 심문	승관
순조	5월 26일	보고 내용이 자복인지 발명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비판, 誤捉과 誣盜를 단 락이 다른데 포장과 포교의 입장이 서로 다름 (재조사 지시)	
좌우포도청	5월 27일	左邊捕盜軍 官趙德行(六十), 右邊捕盜軍官 洪舜良(五十六) : 3차 심문	승관
좌우포도청	5월 28일	포도청 계목 진달 : 진장을 없이 조이의 말을 믿고 오착한 후 단련형을 시행 해 무복을 받아냄/ 형조 이관	
형조	5월 25일	절도범 신인득 1~2차 심문	무복 주장
		매장범 김흥손 1~2차 심문	
		형조 계목(무복내용) 진달	
		순조 포도대장 처벌 포교에 대해 조사 지시	조작에 대한 조사 지시

판공의 사건 조작 과정

단계	단계별 내용	시행 내용
1단계	고문 시행	양 어깨를 대들보에 메달고 몽둥이로 무수히 단련함(兩臂懸于樑木 以枕以椎無數鍛鍊)
2단계	판공이 주도하여 범죄 사실 조작 5차에 걸쳐 신인득 심문	1) 투절 자복 2) 장물 척매처 및 매수자 조작 3) 장물 봉가 조작
3단계	신인득(장물척매자), 김흥손(장물 매득자) 대질 및 내용 조작	1) 두 사람에게 서로 면식이 있었음을 강요 2) 두 사람에게 봉가(6냥) 액을 주지시킴
4단계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음	향후 포도대장 앞에서 친문할 때 지금까지 내용을 틀림없이 진술할 것을 단도리 함



연행 순직군 신인득 사건

- 신인득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도가에서 받았던 고문은 일명 '鶴舞'라는 형벌로 추정됨
- ,죄수의 양쪽 어깨를 뒤로 묶어 대들보에 매단 후 枕과 椎로 무수히 鍛鍊하는 형식
- 포도청의 치도형벌인 난장이 폐지된 이후 그 대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임
- 형정풍속화가인 김윤보의 <使罪人鶴舞>와 김준근의 <학춤취이는조인>에서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음

포교의 효시, **땅꾼**

- 탄군(丹+叱軍)은 탄꾼, 땅군, 땅꾼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포교와 포졸의 하수인으로 이들의 지시를 받아 수사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탄군은 떠돌이 거렁뱅이(浮浪流丐)거나 도적 전과를 가진 부류(或已經賊律之類)로 상시로 ‘포교의 효시(捕校之嚆矢)’가 되어 오랫동안 도하의 큰 폐해(巨癘)를 만들고 저자에 횡행하며 공공연히 겁탈하고 평민을 무고하여 도적을 만들기에 애쓰고 심지어 무고하게 살월(殺越)의 우환을 일으키기도 했다(『승정원일기』 순조 23년 6월 3일).
- 김화진에 따르면 ‘땅군’은 주로 전과범으로 자자형으로 낙인찍혀 일반인과 섞여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청계천 하류에 모래가 쌓여 형성된 조산(造山)에 움집을 짓고 집단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땅속에서 따로 사는 무리를 약칭해서 부른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한 땅군은 범죄인으로 낙인 찍혀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할 수 없이 켜구(거지, ‘깍정이’) 노릇을 했는데, 성종대 포도청으로 하여금 이들 중 두목을 선출하여 통솔하게 하였는데 이자를 ‘꼭지땅’이라고 불렀다고 전한다(김화진, 『한국의 풍수와 인물』, 을유문고, 1973, 278~279쪽).

포교의 효시, 땀뽀

- 1878년 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기억에 따르면 “포교들 밑에는 일종의 관군들이 있고, 다시 그 밑으로는 충동할 때 그들을 수행하는 하급직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망나니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들은 최하층의 사람들로써 흉측한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전에 도적이거나 죄수들이었는데 풀어주고 망나니로 삼은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리델이 말한 망나니가 땀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펠릭스 클레르 리델 지음, 유소연 옮김, 『나의 서울 감옥생활 1878년 -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19세기 조선체험기-』, 살림, 2008, 70쪽).
- 속담 : 도둑에도 의리가 있고 땀뽀에도 꼭지가 있다 : 못된 짓을 하는 자들에게도 저희끼리 지켜야 하는 의리나 질서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월간 어깨동무 별책만화 글, 그림 김덕보, 1983.

출처:([어깨동무] 84년 12월 별책부록 만화챔피언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판군의 사건 조작 — 파찰상 김가

판꾼(丹/叱)軍)이 방에 들어와 나에게 이르기를 “너를 장차 죽으려고 자복하지 않느냐?”

신인득이 이르기를 “이미 자복했습니다.”

판꾼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매장인(買贓人)을 지목하지 않는가?”

신인득이 이르기를 “저는 가게주인의 성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목하겠습니까?”

판군이 이르기를 “허다한 것이 廬房인데 어찌 지목하기 어렵단 말이냐?”

저는 목전의 화가 다급한 나머지 “바리전(鉢里廬) 제1방에서 팔았다”고 말하자 단군이 나갔습니다.

판군의 사건 조작 : 봉가 6냥

판군이 진술을 종용하자 “20냥을 받고 남문밖 파철상 김가에게 팔았고, 주보 등은 이미 낡아 불에 태웠다”고 꾸며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판군이 또다시 들어와서 나에게 이르기를 “봉가 20냥이라고 한 말을 사리에 가깝지 않다. 철의 무게가 10근에 불과한데 파철 가격으로 따져보면 불과 5, 6냥에 불과할 것 같은데, 네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 죽음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라고 했다.

제가 “그렇다면 6냥을 받았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니 판군이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느냐”

심인득과 김흥손의 대질

- 포교가 (중략) 어떤 사람을 불러 얼굴을 보게하고 나에게 이르기를 “이자가 파철상 김가인데, 너는 어찌 爐盆 등의 물건을 이자에게 척매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하자 저는 비록 (그를) 안다고 하기에 애매했지만, 좀전의 흑형이 두려워 (그 자에게) 척매했다고 말했다.
- 김흥손은 대질 초기 매득(買得)하지 않았다고 극구발명(極口發明)했는데, 포교가 “이놈 역시 포도청에서 죽고 싶은게구나?”라고 호령하고 백반으로 공혁(恐嚇)하자 6냥에 매득했다고 거짓으로 대답했다.

진술을 버보하지 말도록 강요

- 교졸배가 (김흥손에게) 진실로 포도대장 앞에서 진술을 뒤집지 말라는 뜻을 신신하게 말했는데 대장 앞에 들어가서는 한결같이 진술했다.
- 포교배가 (신인득에게) 포도대장이 앞에서 친문할 때 혹여 조금이라도 진술에 어그러짐이 있으면 포도청에서 죽을 것이며 반드시 오늘 고한바대로 서로 부합한 연후에 가이 살아날 것이다.

본 사건에서 확인된 수사 방식의 특징

1) 죄수를 포도청에서 수사하는 대신 ‘향도도가’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사전 수사를 진행

- 비법적 고문을 가할 수 있는 공간, 죄수에게 조작된 사실을 진술하도록 강요
- 포도청의 수사기록인 초기(판부)의 진실성 문제

2) ‘포교의 효시(嚆矢)’ 판군의 역할

- 포교가 고용인을 동원한 비법적 수사 관행
- 죄수에게 조작된 사실을 진술하도록 협박

3) 조이(釣餌) 및 소개(紹介) 등의 제보 활용 및 조이전을 지급

- 포도청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행인 조이와 소개 등을 통해 범인을 체포할 경우 오착(誤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

4) 포도청 오착에 대한 서울 사람들의 집단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 함

- 17~18세기 동안 포도청 오착사건은 주로 하례(별감, 나장, 원예)들과 갈등을 빚었지만, 19세기 들어 점차 일반 도성민과의 갈등이 늘어났고, 집단 난동이라는 저항이 빈번해지고 과격해 짐



독도(蘓島, 독섬, 箭串坪, 살곶이벌)

독도(蘓島) 주민 집단 폭행 사건(사례 4)

사건 개요

- 철종 2년(1851) 가설포교 유해룡이 포졸을 데리고 독섬을 기찰하던 중 고덕철을 도적이라 판단하고 오착
- 아우 고완철이 마을 존위(尊位) 홍낙철에게 형의 억울함을 호소
- 존위(里任)가 동계의 중임(中任) 이상길·한종호·고완철 등에게 동민에게 동참하지 않는 자는 동네에서 축출(不從者損徒)하겠다고 엄포를 놓음
- 무리를 이끌고 효경교 천변에 있던 포교 막사에 난입해 고덕철을 탈옥시키고, 가설포교를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부분 한양도, 1760년대, 개인소장

조사기관	일자	심문 절차	기타
좌우포도청	2월 7일	존위 홍희일 1~3차 심문	승관
		홍희일과 중임 한종호 대질 심문 홍희일과 고완철 대질	
	2월 9일	이경철·김관희·김순길·유은길·전호길·한종호·고완철·한복대·정말김· 원치성·정영손·함순길·고덕철 등 13명 심문	승관
		단순 살월 사건이 아니라 강도사건으로 간주하여 수창(首倡)과 수범 (首犯) 군문에 내보내 효수(梟首)하여 군중에게 경계하게 함, 단순 가 담자 11명은 형조로 이관한다는 계목을 진달	계목
형조	2월 10일	수창자 참수, 나머지 10인 감1등	조율
어영청	2월 10일	한종호(수창)·고완철(수범)은 백사장에서 군민을 모아놓고 효수함	효수

조사기관	일자	심문 절차	기타
포도청	4월 13일	도피했다 체포된 이상길, 차개우리, 송맹석, 신익화 등에 대한 공초	
		포도청 이상길은 수범으로 간주하여 참수해야 한다고 계목을 진달함	계목
철종비답	4월 14일	이에 국왕 철종은 옥사에 정범이 둘일 수 없다(獄無兩犯)는 흠흠의 뜻에 따라 특별히 목숨을 용서하여, 엄형 3차 후 절도 감사하고 노비로 삼음(特貸一縷, 嚴刑三次後, 絶島減死爲奴)	비답
형조	4월 15일	위의 비답에 따라 최종 조율 및 처벌 함	조율

사건의 특징과 의미

- 1) 기찰포교가 고덕철과 같은 잡기 범인을 도적으로 몰아 체포하는 오착 사례가 빈번함
- 2) 포교의 비행에 대해 백성들의 불만과 억울함이 폭력적인 집단 저항으로 표출
- 3) 본 사건은 포교의 오착에 대해 향약(鄉約) 혹은 동계(洞契)를 통한 자치조직이 집단으로 포도청에 저항한 특징
- 4) 존위 흥희일은 조직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만 했다는 이유로 감사 정배됨. 주요 수창 및 수범으로 지목된 한종호와 고완철 등은 효수로 처벌됨. 동민들이 집단행동에 가담한 까닭은 향약규약에 따라 ‘不從者損徒’를 두려워 참여함
- 5) 포도청의 심문기록에 대해 국왕이 직접 비답을 내린 후 형조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조율에 들어감



흥인문

동대문 여령(女伶) 오착 사건(사례 5)

사건 개요

- 포도청 기찰 포교 최형순과 포졸 최장춘이 여령(女伶)을 초출(抄出)하기 위해 동대문 근처에 사는 오원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그의 여식을 강제로 끌어냄
- 이 과정에서 동민(洞民)과 수문군이(?) 합세하여 포교를 내쫓고 그의 딸을 구출함
- 이 과정에서 임신 4개월의 태아를 유산을 하고 산모도 사망 했고, 포졸 1명도 사망 함. 오원춘은 포청에 어울함을 호소하려 갔다고 중곤을 맞고 치폐 됨
- 포청의 포교들이 보복하기 위해 동대문 수문군 이상국과 동료 병대(兵隊)를 체포하여 폭행하고 잡아다 곤장을 쳐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함(수문군 신유문 사망, 이상국 사망직전, 김봉선 사망직전).
- 이에 이상국의 매형은 최학길이 도감에 이를 알리자 병대 대장 탁기항이 수백명을 이끌고 포도청 감옥을 부수고 이상국을 탈취해 옴(수직포교 차호영이 구타당함)

도성도, 1750년대

사건의 특징과 의미

- 1) 『육전조례』 형전에 따르면 여령은 양포청이 경기도내 술집에 떠도는 여성을 솔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왕실이 행사를 위한 여령을 소집하는 업무도 수행함.
- 2) 이 사건은 포교가 여령을 오착해서 양인 부녀를 강제로 징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그 과정에서 일반백성과 포교가 사망사고가 발생함
- 3) 포도청의 다양한 오착의 사례를 통해 포교의 전횡과 무단성을 엿볼 수 있음
- 4) 과도한 여령초출 사건이 병대에 대한 보복사건으로 확대됨
- 5) 포청의 오착 대한 민들의 저항은 사법적 구조에서 무복을 호소하거나, 해당 관청에 등장을 보내 호소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았지만, 포도청은 폭압적 공권력을 앞세워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한 사례가 늘어남
- 6) 서울민들로부터 포도청의 공권력은 점차 신뢰를 잃어 감

마치며 - 본 19세기 포도청의 특징과 의미

- 1) 포도청의 제도적 개혁이 획기적이지 못함
- 2) 포도청이 ‘치도’기구라는 목적에 지나치게 집중
- 3) 사회의 변화에 따른 치도의 개념이 다양한 사회범죄로 확대되었지만, 포도청의 조직과 치안행정은 다각적인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보수적 체계를 견지한 한계를 지님
- 4) 결국 사법기구로서 지배층에게도 천시당하는 직종이 되었고, 도성민에게도 과도한 공권력을 동반한 폭압기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의 적극적인 저항에 직면함
- 5) 결국 1882년 갑신혁신평정강 14개 조항 가운데 “⑧ 시급히 순사제도(巡査制度)를 두어 절도를 방지할 것” 규정을 마련할 정도로 포도청의 치안력이 유명무실해짐.
- 6) 1894년 갑오개혁때 “좌우포도청이 폐지되고 경무청이 신설됨
- 7) 경무청의 신설은 19세기 치안을 위한 불가피한 개혁이었지만, 기왕의 포도청의 조직과 운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 포도청 관원의 교체에 따른 혼란, 포도청의 활동에 적응해 있던 구도에서 경무청은 쉽게 정착하지 못한 면이 있었음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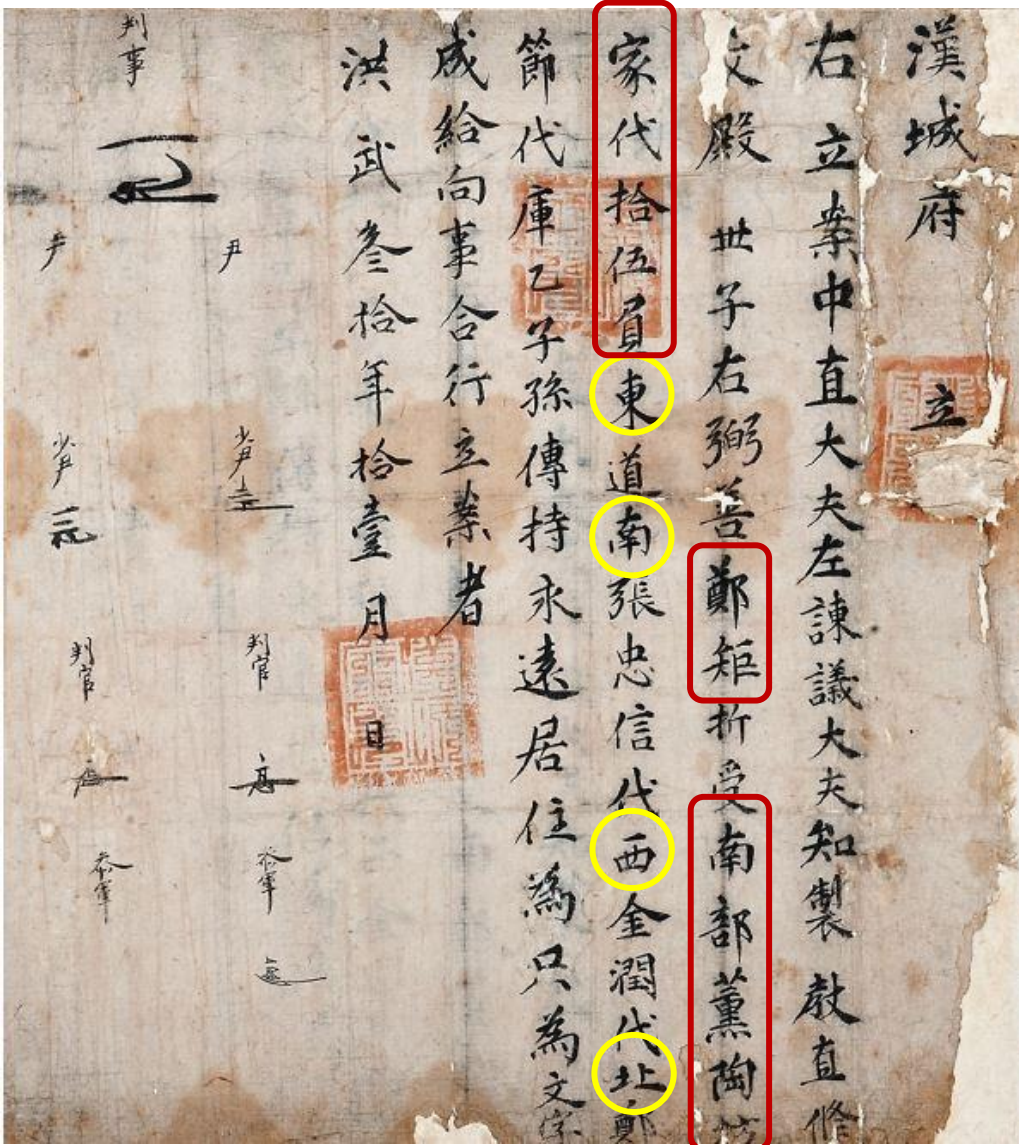
- 김우철, 〈조선후기 추국 운영 및 결안의 변화〉, 《민족문화》 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 I. B. 비숍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0.
- 유승희, 〈17~18세기 야금제의 운영과 범야자의 실태 - 한성부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87, 2013.
- 이은석, 〈조선시대 지방옥(옥(獄)) 구조에 관한 고찰 -발굴 유적과 고지도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재》 Vol.54 No.4,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 이근호 외, 《한양의 중심 옥조거리》, 서울역사박물관, 2020.
- 조운선, 〈19세기 典獄署 분석 -『六典條例』·『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 中橋政吉, 《朝鮮舊時の刑政》, 民俗怨, 1936.
- 차인배, 〈조선 후기 포도청의 야순 활동과 야금 정책의 변통〉, 《한국학연구》 3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 , 〈조선후기 포도청의 사법적 위상과 활동 변화〉, 《역사민속학》 58, 한국역사민속학회, 2020.
- , 〈조선전기 치도형과 난장의 유래와 운영〉, 《역사학연구》 82, 호남사학회, 2021.
- , 〈조선후기 치도형의 운영과 폐지 과정 -포도청의 난장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53호, 한국법사학회, 2021.
- 퍼시퍼 로웰 저, 조경철 역,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사람들》, 예담, 2001.
- 펠릭스 클레르 리델 지음, 유소연 옮김, 《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 -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19세기 조선 체험기-》, 살림, 2008.

한성부 주택소유 형태와 분쟁

유승희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조선시대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마련했나



● 조가지 (造家地)의 분급

- 1395년(태조 4) 정월: 신도(新都)에 거주할 민의 택지 분급 규정 마련.
: 정1품 35부, 정2품 30부, 이하 한 품에 5부씩 내려 6품 10부, 서민 2부.
- <경국대전>의 택지 분급 규정
 - 대군 및 공주: 30부
 - 왕자군 및 옹주: 25부
 - 1·2품: 15부, 3·4품 10부
 - 5·6품 8부, 7품 이하 4부
 - 서민 2부

한성부 조가지(造家地)의 분급절차

- 도성 안 토지 분급이 원칙

“도성 안의 空地를 민들이 자유로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되 관에서 심사하여 측량한다”

- 조가지의 분급 절차

- 거주 희망지 선정 후, 집을 짓겠다는 청원서 제출.
- 청원서 내 집을 지을 가대의 동, 서, 남, 북 사방의 표지 기록.
- 한성부에서 소지에 신청한 해당 지역의 부(部)와 관상감의 관원, 집터를 측량하는 산사(算士)를 보내 현지 조사.

- 규제조항

- 택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가옥 건축.
- 신청 택지에 만2년이 되도록 가옥이 건축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지급.
 - 토지 신청인이 사신으로 외지에 나가 있거나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는 경우, 상을 당해 가옥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제외.

16세기 漢城府의 주택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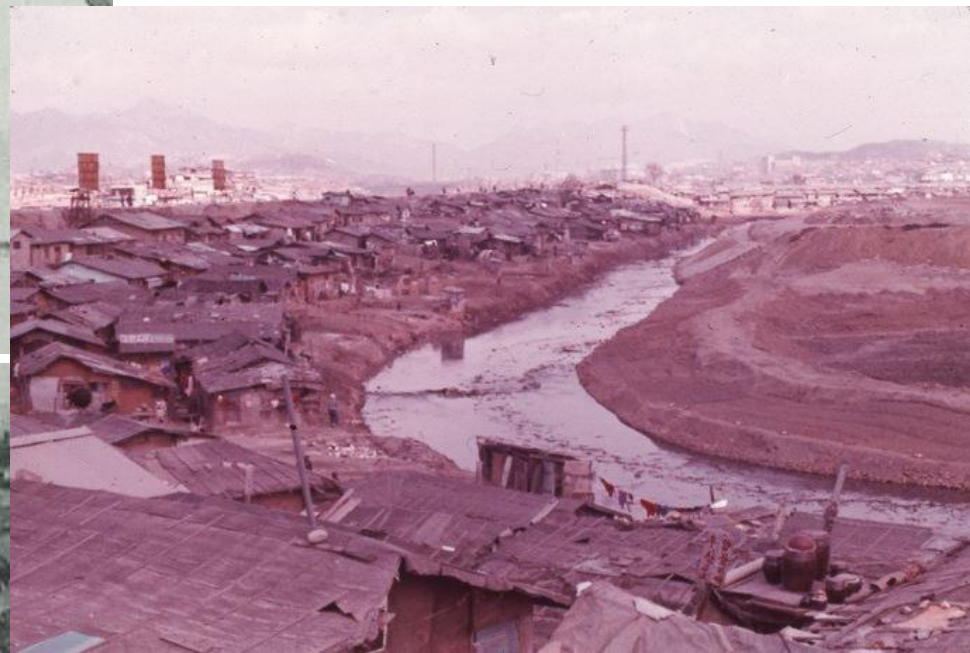
- 도성 내 ‘지협민조(地狹民稠)’ 현상 심화
- 불법 가옥의 만연과 집값의 상승
도성 내 산지나 고지대에 가옥조성

도시 정비

- 불법 주택 및 가옥의 철거
 - 산등성이 가옥은 풍수상의 이유로 철거.
 - 1476년(성종 7) 400채, 1481년(성종 12)에는 경복궁 주변 산지만 199채, 1,000여명.
- 도성 밖 지역으로 주민 분산

도성 내 지협민조(地狹民稠)현상





철거가옥의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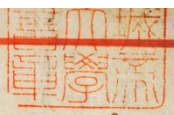
• 임금이 승정원 注書 柳洵을 영의정 申叔舟의 집에 보내어 의논하기를, “지금 圓覺寺를 창건하고 인가의 基地를 철거하는데, 1束의 값을 처음에는 正布 1匹에 준하고, 재목 10간을 轉輸하는 값을 쌀 2석과 보리 1석에 준하고자 하였으나, 집터가 곧 시전의 아주 要地이니, 내가 갑절로 3필이나 주려고 하는데 어떠한가?”하니, 신숙주가 의논하기를, “재목을 전수(轉輸)하는 값은 비록 주지 않아도 좋으나, 집터 같으면 곧 저자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利權을 노리는 땅이니, 세배로 주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5일)

• 선공감 제조 韓致亨 등이 와서 아뢰기를, “나라에서 왕자의 집을 짓기 위하여 값을 넉넉히 주고 인가를 사들입니다. 그러나 그 재목과 기와는 모두 용도에 맞지 아니하고 다만 그 터 밖에 소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空地를 사서 짓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지를 구하여 사는 것도 진실로 어려운 것이다. 집 값을 넉넉히 주어 사들이도록 하라.**”하였다.(성종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28일)

도성 밖 택지 분급

- 도성 안이 포화상태가 되자, 도성 밖 지역으로 주민들을 분산.
- 도성 밖 일부 지역을 부방제에 편입, 한성부민들에게 택지 분급
 - 이북 지역: 동부에 부속시켜 송신방(崇信坊)과 창인방(昌仁坊) 2방 신설
 - 이남 지역: 남부에 부속시켜 예성방(禮成坊), 성신방(誠身坊) 2방 신설.
- 성 밖 지역 가운데 동대문 수구문 바깥으로 민의 주거 공간 확장
 - 도성 내 동쪽 지역의 지기가 부족하였기 때문
 - 수구문 지역이 인가가 조밀하고, 창고가 많이 쌓여 있어야만 도성의 풍수상 좋다며 인구가 희박한 남부 예성방으로 택지를 분급 받고자 하는 자들을 거주 하도록 함.

都城圖



16세기 한성부 주택문제와 거주형태의 변화

- 병조·공조·한성부에 전교하기를, “집을 비운 백성들이 들어가 거주할 곳을 마련하여 아뢰라.”하니, 판윤(判尹) 박송질(朴崇質) 등이 아뢰기를, “**도성 안의 빈 집을 원하는 대로 임대하여 거처하게 하되, 만일 빌리려고 하지 않으면 관에서 독려함이 어떻겠습니까?**”하자, 그대로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 9년 11월 6일)
- 중종대 우의정 성희안은
“나라의 도움이 설치된 지 백여 년이 되어 거주하는 사람이 조밀하므로, 성 안은 한치의 땅이 금과 같습니다. 또 풍속에는 집을 세놓는 일이 없으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의지하여 살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산 밑 좁은 땅에 입안을 받아서 집을 짓습니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윤5월 19일)
- **16세기 초 타인의 집에 세들어 사는 ‘차입(借入)’이나 ‘세입(貰入)’ 형성**
 - **택지 공간의 부족과 도성 밖 거주 불안이 만든 조선전기 새로운 주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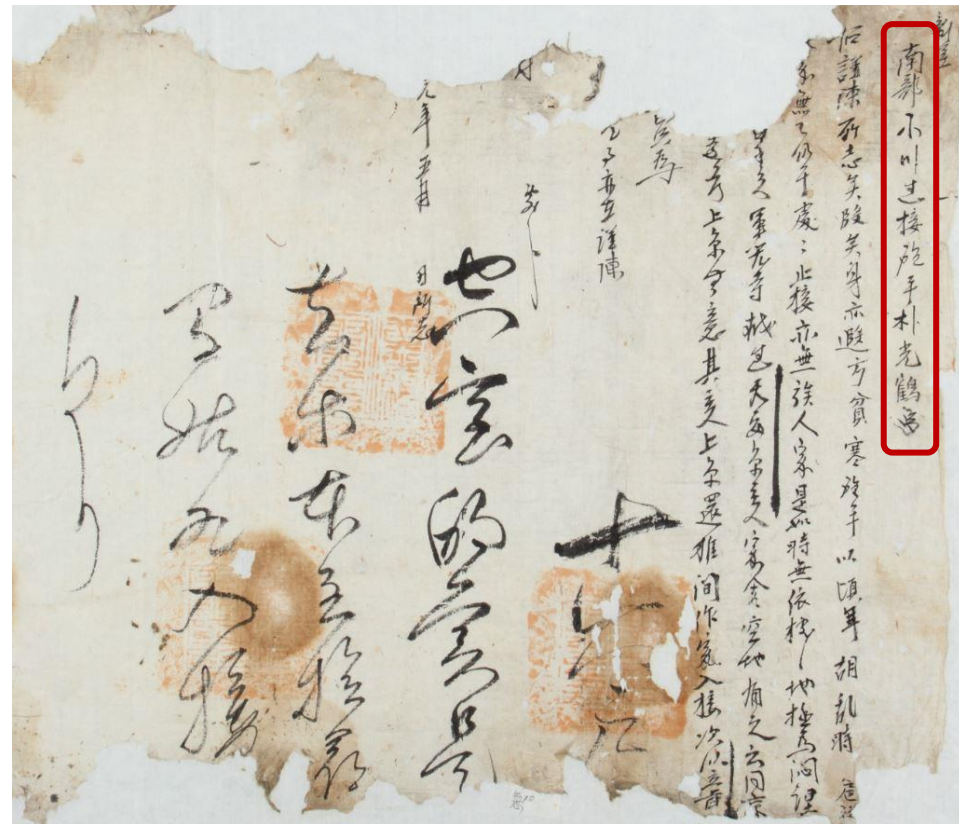
17세기 한성부 혼련도감 포수의 내집 마련기

-한성부 민의 차입과 분쟁

타인의 가대 [私垞] 에 차입

1) 한성부

- 작성시기: 1628년(인조 6) 5월 16일
- 작성자: 혼련도감 포수 박광학.
- 작성이유: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한성부 군기시(軍器寺) 건너편에 위치한 천안 경주인(京主人)의 집에 빈터에 집을 지어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한성부에 요청
- 한성부의 처분: '빈집이 분명하면 본 주인이 추심할 때까지 들어가 살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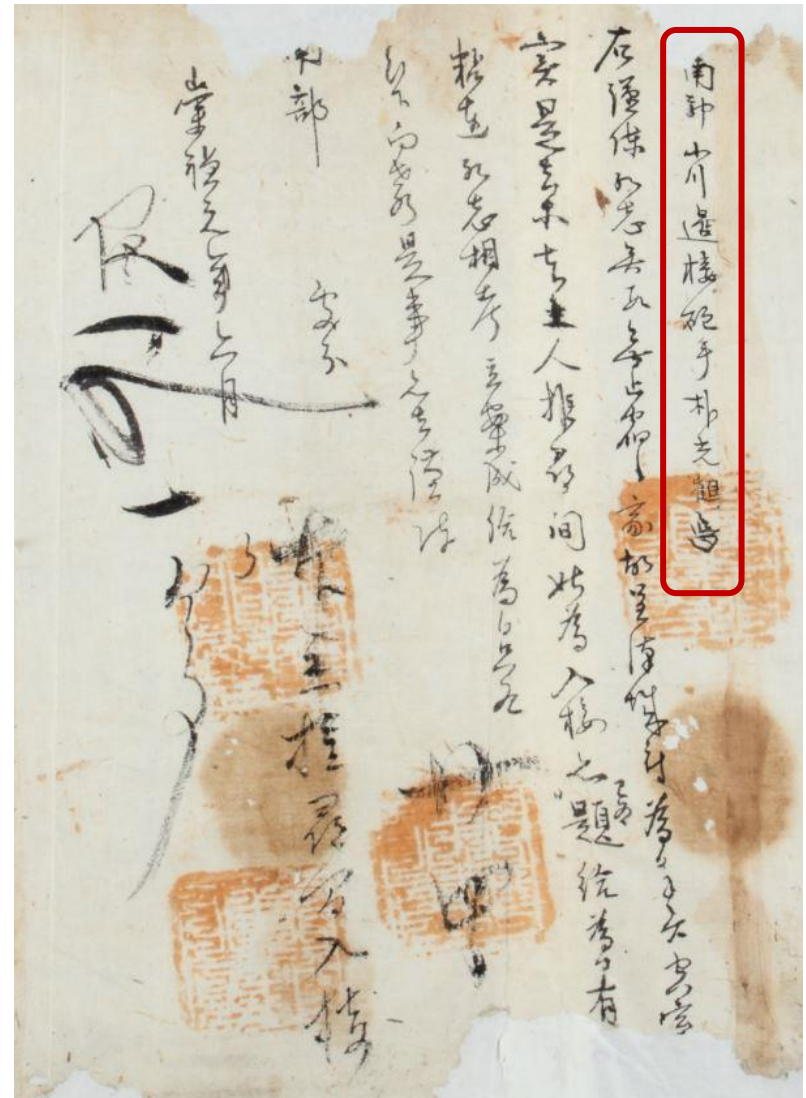


타인의 가대 [私垔] 에 차입하는 과정

2) 남부

- 작성시기: 1628년 6월 24일
- 작성자: 포수 박광학
- 작성이유: 박광학은 가대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해 5월 한성부에서 받은 데김[題音]을 기재, 경주인의 빈터가 위치해 있는 남부(南部)에 입안 신청.
- 남부의 처분: 가대의 주인이 추심할 때까지 입거할 것을 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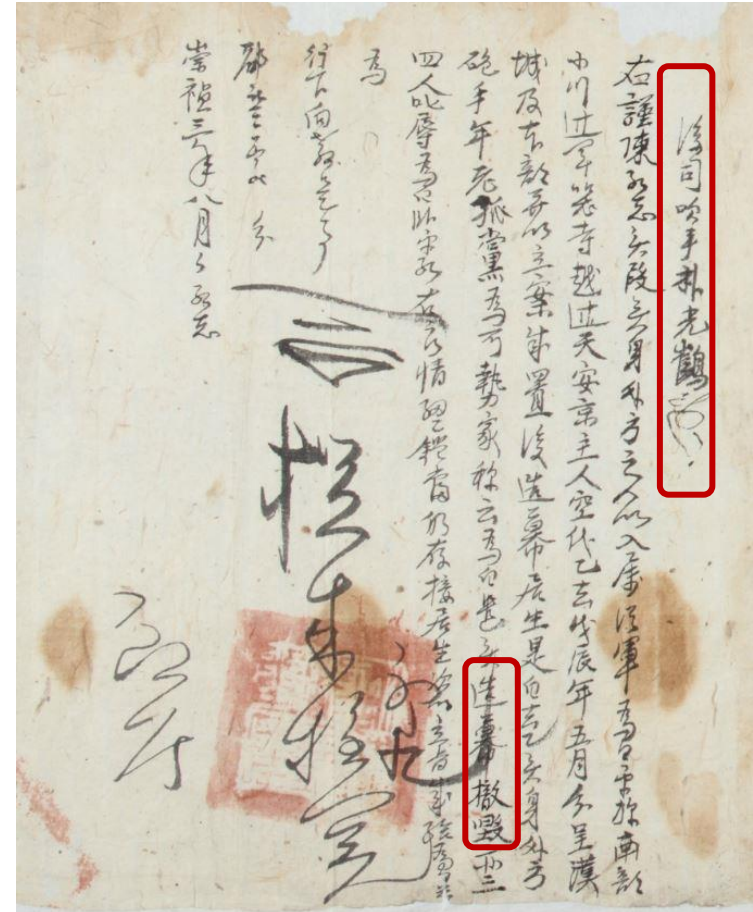
‘빈터확인→ 한성부 입안발급→ 남부 입안발급→ 빈터에 가옥 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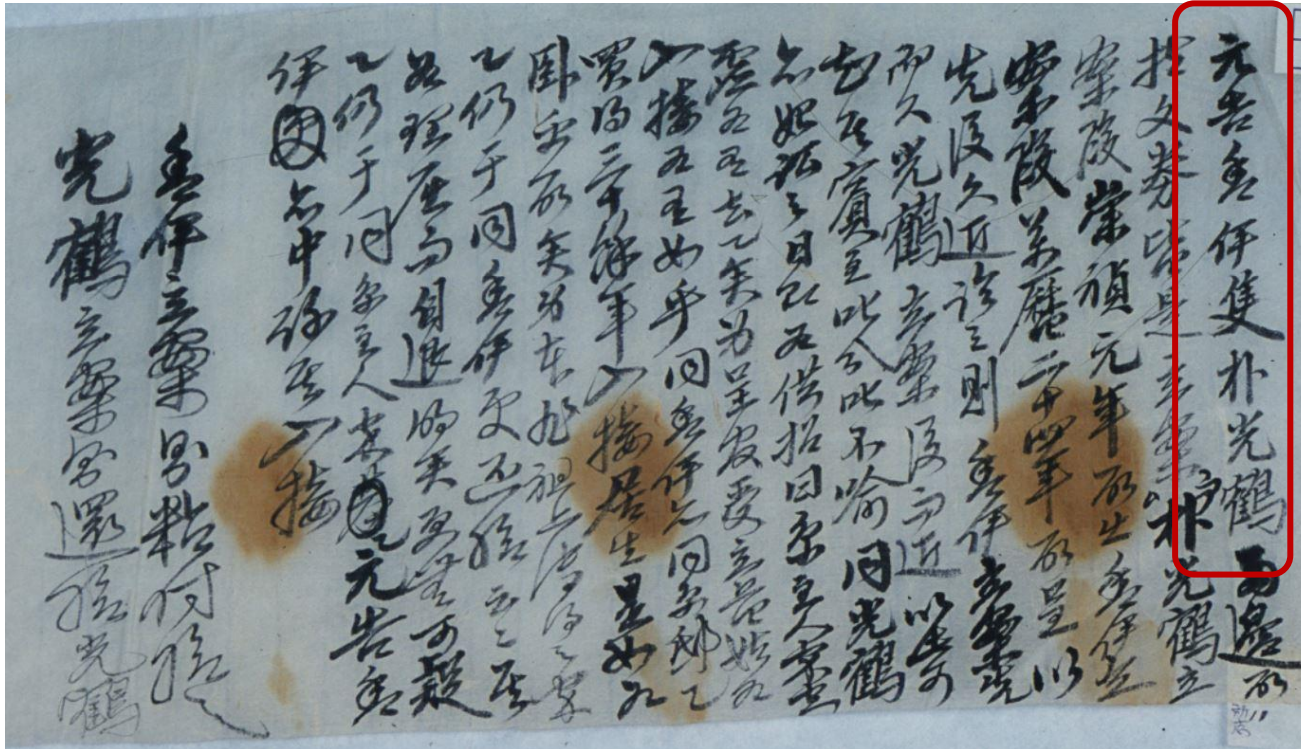
타인의 가대[私貸] 차입과정: 분쟁의 발생

3) 훈련도감

- 작성시기: 1630년 8월 9일
- 작성자: 후사취수(後司吹手) 박광학
- 작성이유: 천안 경주인의 빈 터를 지난 무진년(戊辰年) 5월에 한성부 및 남부에 소지를 올려 모두 입안을 받은 후 막사를 지어 살았습니다. 제가 외방의 포수(砲手)로 나이가 많고 혼자 있으므로 세가(勢家)를 칭하며 제가 만든 막사를 철훼(撤毀)하였으며, 또 3, 4인이 꾸짖고 욕을 하니 위와 같은 실상을 자세히 보시고 그대로 거주하여 살아갈 수 있게 입지를 성급하도록 분부하실 일.
- 훈련도감의 처분: 잡아와서 심문하라.



17세기 한성부 민의 차입실태 : 분쟁의 결과



4) 제음(題音)

- 원고: 향이(香伊)
피고: 박광학
- 소지한 입안 시기와 박광학의 진술에 따라 원고 향이에게 경주인의 가대 거주 허용.

▶ 타인의 가대를 차입하는 사람의 경우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집주인에게 쫓겨나는 등 불안정한 거주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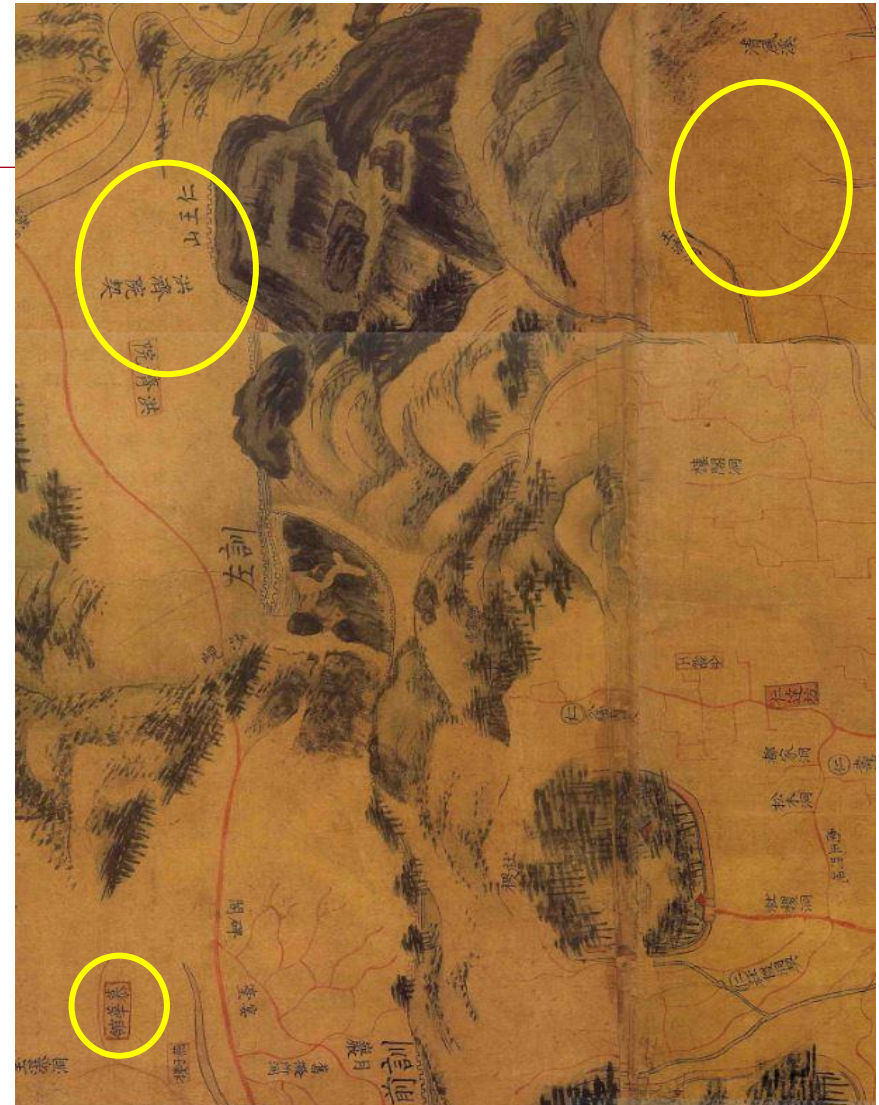
중부 수진방 간동계에 사는 이흘 등의 등장(等狀)

- 저희 모두는 국가의 군병으로 빈한함이 심하여 본래부터 가사가 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가 계속되었다가 마침 중부 수진방 간동계에 빈 가대 120칸이 있었는데 승지 정문부의 조상 전래 집터로 여러 대 거주하고 살다가 정문부가 죽은 후 자손 정대영, 정대용이 사정이 생겨 집을 버리고 경상도 진주땅으로 이사를 하여 동 가사와 빈 가대에 다른 사람의 거주를 허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차입(借入)하여 거주한 것이 이미 40년으로 오래되었는데, 중간에 본 주인을 사칭한 자가 해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 요사이엔 수원에 사는 유학 정대운(鄭大雲)이라는 자가 저희들이 사는 곳에 와서 가대(家垔)를 측량한 후 백문기 1장을 내어 말하기를 '이 터는 형제들과 화회(和會)할 때 나의 몫으로 상속받은 것이다. 지금 방매하고자 하니 너희들이 사지 않으면 즉시 세가(勢家)에 팔 것이며 너희들은 모두 쫓겨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저희들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진주에 사는 유학 정대영의 가기(家基)로 인근의 노인들도 모두 알며, 남쪽 변 가대 48칸은 주인인 정대영이 서리 오신(吳信)에게 나누어 판 것이 분명하며, 그 나머지 빈터는 저희들이 집을 지어 거주하였습니다'라고 말하니 정대운이 아무 말 없이 퇴거한 후 또 와서 2차, 3차 측량하고 방매한다고 칭하며 훼손(毀黜)시킬 계락을 내었습니다.
- 소유자 정대영- 노(奴) 사경에게 가대의 매매를 일임, 수진방 공대를 별좌 이신우의 처 정씨와 서리 오신에게 판 전매문기 존재. 문기에는 소송 가대 4표의 인가가 모두 기록.
- 정대운- 가대의 사표가 명확하지 않고, 측량한 가대의 칸수도 자신의 문기와 맞지 않음.
- 한성부- 정대영은 소송 가대를 매득할 때부터 관리한 반면, 정대운은 70년 동안 한 번도 추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부 수진방 간동계의 가대를 정대영의 토지로 인정. 차입자의 거주권 보장.

공대 차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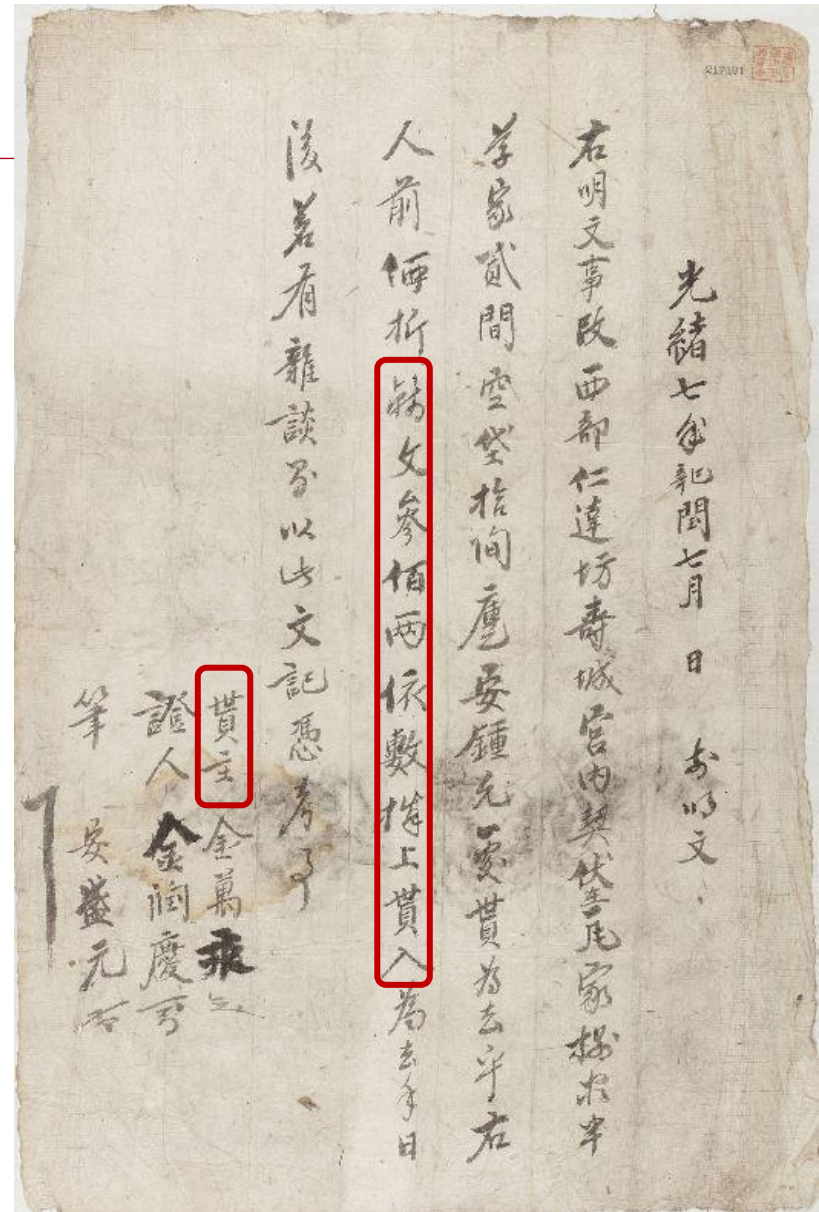
인왕산 주변: 군병의 집단 거주지

- 인경궁 옛 터; 1683년(숙종9) 훈련도감군 334명의 가대 분급.
- 위치: 인경궁 궁장 밑에서 인왕산 기슭.
- 홍제원계(弘濟院契): 16호 거주 가운데 노비 3호, 출신, 유학 각 1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약 70%가 군병. 연서역계(延曙契)의 경우 전체 96호 가운데 무관 및 군병이 26호로 약 30%.
- 모화관(慕華館)의 공터: 훈련도감 승호군의 가대로 지금



세문(貰文)의 작성과 세전(貰錢) 지급

- 동부 연지동 유학 이만길: 이경옥의 집에 세입. 초가 7칸에 60냥
- 유서: 외삼촌의 노비 집을 세입, 70냥 지급.
- 유심: 서부 경영고(京營庫)에 있는 최수만의 집을 세입. 이후 다시 세전 120냥을 받고 이흥에게 세를 줌.
- 1881년(고종18) 김만영이 서부 인달방 인달방(仁達坊) 수성궁내계(壽城宮內契) 와가 8칸 반, 초가 2칸, 빈터 10칸을 안중윤에게 300냥을 받고 세를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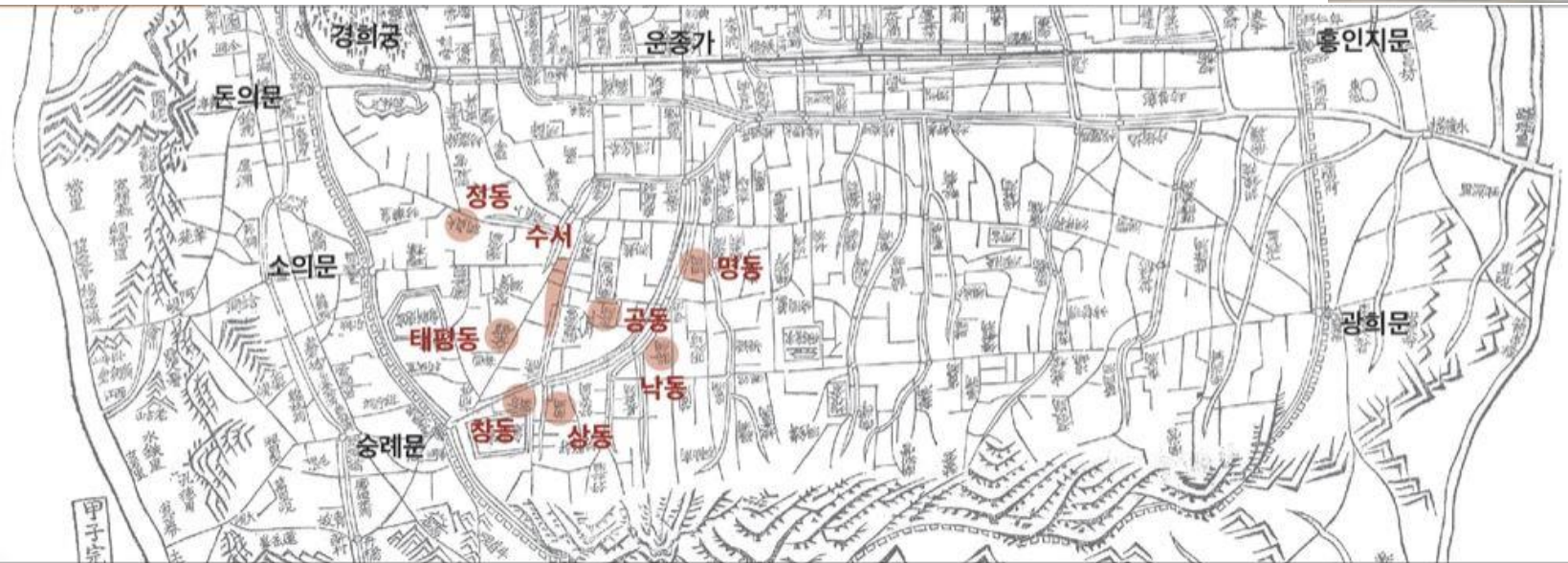
양반 유만주의 내집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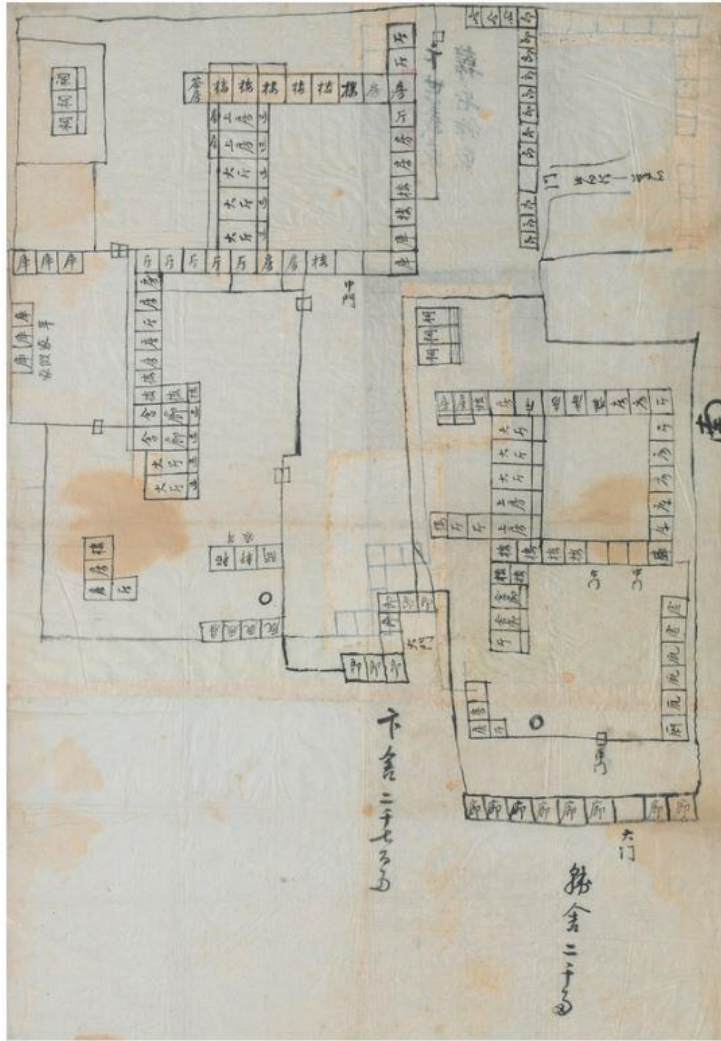
- 유만주: 기계 유씨. 한양을 대표하는 명문가.
- 아버지 유한준: 노론계 문인. 1781년 한성부 서윤. 옥류동에서 살다가 남촌 이주. 종가는 낙동(駱洞, 충무로), 친인척들은 창동(倉洞, 남창동), 수서(水西, 남대문로 4가), 난동(蘭洞, 회현동) 등에 터를 잡음.

"서울의 재물은 집값에 모두 들어가고, 시골의 재물은 환곡(還穀)에 들어간다"



유한준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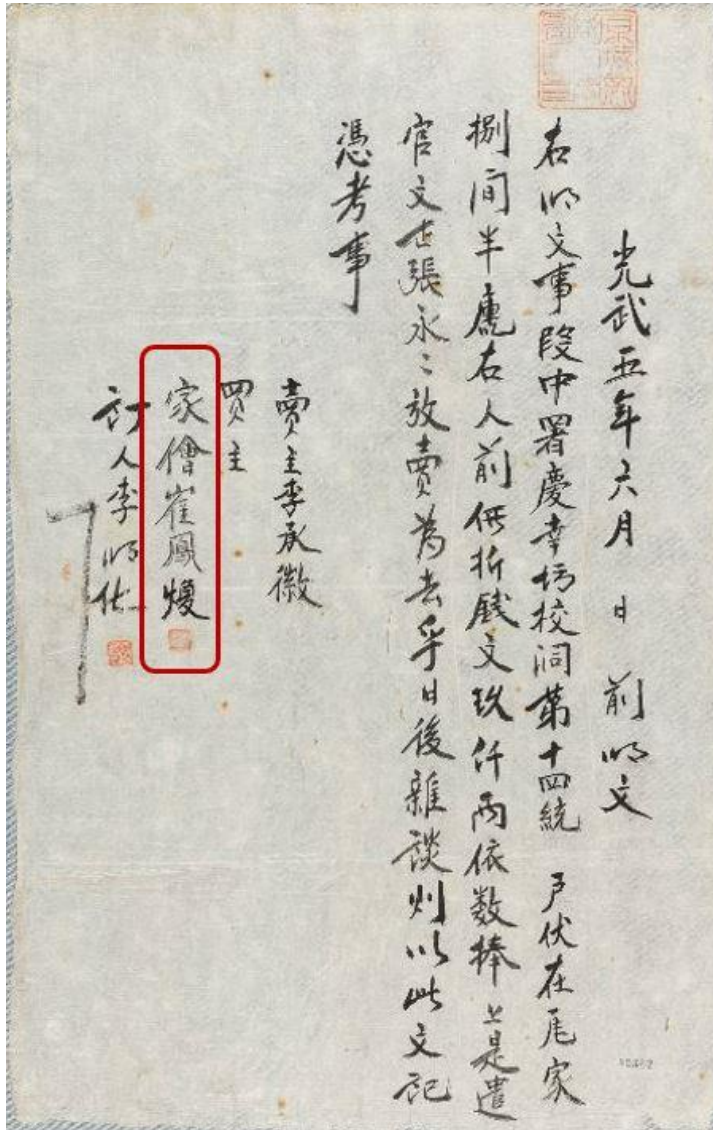




- 유만주: 창동 거주.
- 1784년 1월 이후 집주름과 함께 창동, 낙동, 수서, 공동의 여러 집을 살핌.
- 6월 낙동집 계약, 이삿날 통보, 다음날 계약 파기.
- 명동 집구경-집 도면 확인. 집의 규모와 형태 알려줌 -집계약 -집문서 교환 -아버지반대-이삿날 확정-이사
- 8개월 만에 100칸 짜리 명동 집 마련. 가격 2000냥.(한양 최고가 주택의 1/10)
- 1년 뒤 창동으로 이사(930냥)

조선말 변세의(2700냥)와 한택조 집(2000냥)의 배치도(한국학중앙연구원)

오늘날의 부동산 중개인, 가쾌(家僧: 집주름)



- 가옥의 매매, 임차에 관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계약을 매개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
- 집 소개, 매매가격 흥정, 집 매물에 대한 도면 작성, 집 계약 및 취소, 이사기한 설정, 전 주인과 집문서 교환, 매매계약작성 등 집 매매 전 과정에 참여.
- 18세기의 경우 훈련도감 포수들이 집주름으로 활동.

❖ 가쾌의 중개 수수료:

- 유만주의 경우 낙동의 집을 계약하고 집주름에게 해주 먹 4홀, 붓 3자루, 담배 1근을 보내주며 별도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함.
- 1899년(광무 3) 명례방 저동계 초가 7칸이 3,150냥에 거래. 집주름에게 126원이 지급.

남의 집을 빼앗고, 뺏기다 : 여가탈입(閼家奪入)의 금지

● 민가를 차입한 사대부들의 유형

- 상전이 피접 때문에 자기 노비의 집에 있는 경우
- 집주인이 상전의 친족이어서 피병하려고 내접한 경우
- 속량되어 양인이 된 노비의 집을 옛 상전이 쫓아내고 들어간 경우

● 여가탈입의 사례

- 경종 2년 양반 권씨-서부 소정릉동에 사는 서리 조희벽(趙希璧)의 집을 탈입. 탈입 여부를 조사하러 나온 부관과 동임을 구타.
- 병조좌랑 이자(李滋)- 이유 없이 역관의 집을 차지하고 탈입했으며, 주인에게 음식 제공 강요.
- 영조대 전 연기현감 황윤후: 민가 탈입. 수개월 동안 3번이나 거처를 옮김. 이사할 때 뇌물을 받고 강제로 인근 주민들에게 땔나무 징수.
- 효종대 관상감 정홍주: 친구 박우준이 상을 당해 빈 집이 되자 이를 빌려 거주. ‘여가탈입’으로 규정되어 파직.
- 숙종대 사간 김주, 지평 송유룡: 차입했으나 여가탈입으로 간주. 사직 요청.

● 도성 안 여역 발생시 도성 밖으로 피할 경우는 차입 허용.

- 숙종 9년 도성 내 여역이 번성하자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성 밖 및三江으로 내보내어 차입을 허용함.

● 여가탈입의 처벌:

- 士人- 장80 도2년의 형,
- 朝士- 장100 도3년의 형과 함께 파직.
- 영조대: 민가를 매입하거나 세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청현직 진출이 금지. 대소과의 참방(參榜)도 탈락. 조관은 2년 금고, 선비는 6년간 과거 정지.

- 숙종, 영조대 여가의 탈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부에서 5일 마다 적간, 매 월 말에 차입, 세입자의 문건을 왕에게 보고.

可不戒哉另飭禁斷

肅宗六年戶曹判書閻維重啓曰明安公主家舍基址被違郎官打量則通合諸家為一千八百二十六間曾在 先朝公主第宅基址皆以一千二百間為定今此打量比前例所加者多至六百二十六間宜有裁減之道 依允

閻家奪入

肅宗元年閻家舍驅出勒入者論以侵占他人屋之律漢城府及當部官負掩置不報者論以制書有違之律

英宗元年嚴禁士夫之奪入閻家者隨現論罪 教曰無家者相貫勢所不免士夫與士夫常漢與常漢相貫則此亦何妨但

과거나 현재 변하지 않는 서울의 주택소유와 분쟁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집을
구매하거나
투자를 함



홀로가

올로+홀로+가(家)

DREAM
HOUSE



청포족

청약포기족
높은 청약 가점
경쟁률과
자금부족
으로인해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

